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34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박덕흠 • 이헌승 • 최은석

김성원 · 서천호 · 장동혁

이양수 • 박수민 • 고동진

성일종 • 안철수 • 박상웅

강대식 • 박정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소속공 인중개사·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3년으로 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할 경우 주택 등에 출입이 잦은 중개업무 특성상 범죄의 우려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자에 대한 현행 결격기간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대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결격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범죄의 종류·죄질,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20년의 범위에서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로서 종사 등을 제한하도록 결 격기간을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중개업무 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함과 아울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등).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금고"를 "제4호 각 목에 따른 죄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11호"를 각각 "제12호"로 한다.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

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제6호"를 "제7호"로, "제11호·제12호"를 "제12호·제1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제4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는 같은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			
	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5. 제4호 각 목에 따른 죄 외의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u>5.</u> ~ <u>11.</u> (생 략)

-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 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 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 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 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죄
- 죄를 범하여 금고-----
- 6. ~ 12. (현행 제5호부터 제1 1호까지와 같음)

-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② 제1항제1호부터 <u>제11호</u>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 원이 될 수 없다.
-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하 "개업공인중 개사등"이라 한다)이 제1항제1 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 할 수 있다.
- 제38조(등록의 취소) ① 등록관청 저 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u>제6호</u> 까지 또는 같은 항 <u>제11호·</u> <u>제12호</u>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u>13.</u>
② <u>利12호</u>
③
340.7
<u>제12호</u>
 세38조(등록의 취소) ①
제13호

항 <u>제12호</u> 에	따른 경	결격사	유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부	터 2개	월 이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8. (생 략)

② ~ ④ (생 략)

<u>제13호</u>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